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9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김영진·백혜련·허 영

조 국・염태영・김준혁

임호선 · 서삼석 · 김승원

박희승 · 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 및 청구 절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해당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도록 함.

2)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가 신청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안 제9조)

- 1)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함.
- 2)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 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도 록 함.
- 3)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국가 등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함.

다.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안 제15조)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은 거주지정 대상자는 1일 이상 출장, 여행 또

는 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거주지 지정명령의 이 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 구 등의 지시에 따르도록 함.

라. 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안 제16조)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이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직업, 가족 상황 및 주거상태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지정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안 제17조)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안 제18조 및 제19조)

보호관찰소의 장, 거주지정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주지정 대상자의 성행과 환경 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벌칙(안 제26조)

거주지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조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 나.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률 제 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사람

- 2. "거주"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매일 기거하는 것을 말한다.
- 3. "거주지등"이란 거주지 또는 거주 예정지를 말한다. 다만, 일정한 거주지나 거주 예정지가 없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소지를 말한다.
- 4. "거주지 지정명령"이란 법원이 제9조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 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 한다.
- ② 제1항제1호 각 목의 형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 1.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이외의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의 기간 전부를 형기로 본다.
- 2. 하나의 판결에서 성폭력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징역형의 기간을 합산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 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및 재판

- 제4조(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중 「형법」 제72조제 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라 한다)이 부과되지 않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전에 같은 법제22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검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나이, 건 강과 신체 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①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법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 범죄경력 및 범죄의 동기·내용·수법
 - 2.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의 수
 - 3. 재범의 위험성
 - 4. 직업 및 경제력
 - 5. 건강상태,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
 -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거주 지등과의 거리 등 주변 환경
 - 7.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 8. 그 밖에 검사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거주지 지정명령"으로, "피의자"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로 본다.
- 제7조(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검사는 제5조에 따라 거주 지 지정명령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이하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2. 청구의 이유
 - 3. 적용 법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8조(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의 관할로 한다.
- 제9조(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 등) ①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기간(이하 "부착기간"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기간(이하 "거주지 지정기간"이라 한다)을 정

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또는 「성폭력범죄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참작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하 "지정거주시설"이라 한 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⑤ 국가는 지정거주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등에 따른 조치)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을 고지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고지된 날부 터 3일 이내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국선변호인 등)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제3장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

- 제12조(집행지휘) ① 거주지 지정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 관이 집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 제13조(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 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이하 "특정범죄사건"이라 한다)에 대한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된 원인이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구금의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집행한다.
 - ②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지 경명령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집행한다.
 - ③ 보호관찰관은 제9조에 따라 거주지 지정명령을 받은 고위험 성

폭력범죄자(이하 "거주지정 대상자"라 한다)의 부착명령 집행에 따른 위치추적과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은 거주지정 대상자가거주지 지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거주지정 대상자의 거주지 내부에 출입하여 거주지정 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 ④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 정지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거주지 지정명령"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거주지 지정기간"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강화)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지 정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거주지 정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이 부과되 거나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정 대상자 1명만을 전 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 ① 거주지정 대상자는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출장, 여행 또는 출국 등의 사유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출장, 여행 또는 출국 등의 사유로 거주지에 당일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거주지정 대상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거주지정 대상자의 허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거주지 지정명령의 변경) 거주지 지정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결정 이후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거주지 지정명령에 따라 지정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정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정된 거주지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7조(거주지 지정기간의 연장) 법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거주지정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지정기간을 연장하

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8조(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 거주지정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해제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거주지 지정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임시해제 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거주지정 대상자의 직업, 경제력, 건강상태, 가족상황 및 거주지 지정명령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 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거주지정 대상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

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주지정 대상자의 성행(性行)과 환경 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지 지정명령이임시해제된 사람이 부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심사위원회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의 재범의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임시해제 결정 당시의 가족관계, 주거환 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범죄 를 저지른 경우
 -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거주지 지정명령의 남 은 기간 동안 종전에 지정된 거주지(임시해제를 결정하기 전에 지정

- 된 거주지를 말한다)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 기간은 거주지 지정명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1조(거주지 지정명령의 종료) 거주지 지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 1. 거주지 지정명령 기간이 경과된 때
 - 2.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된 때
 - 3. 거주지 지정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거주지 지정기간이 경과된 때
- 제22조(비용부담) ① 거주지정 대상자는 거주지 지정기간 동안 거주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거주지정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23조(거주지 지정기간의 계산) ① 거주지 지정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 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거주지 지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4조(거주지 지정 임시해제의 의제)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 제26조(벌칙) 거주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1일 이상 출장, 여행 또는 출국 등을 한 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출입요 구 또는 점검요구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 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고위험 성폭력범 죄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